

##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1.

발의자 : 이철규 · 박덕흠 · 성일종  
정운천 · 이은재 · 김규환  
김진태 · 신보라 · 염동열  
권성동 · 김선동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밀항 또는 이선(離船)·이기(離機)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,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‘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’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비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,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및 제4조).

##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